

손해사정업무 위탁 계약서(안)

2018. .

위탁자 : NH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병 관

수탁자 :

손해사정업무 위탁 계약서

NH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손해사정업무 위탁 계약(이하 "본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보험사고 손해사정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의 위탁업무처리에 대하여 "위탁자"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위탁업무의 세부사항, 업무처리기준 및 기타 제반 조건을
정하여 위·수탁 관계의 효율적인 설정 및 유지를 도모하여 "위탁자"의
업무 전반의 효율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변경, 해지
등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계약만료 익일로
부터 1년씩 동일한 계약내용으로 갱신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에 "위탁자"가 의뢰한 업무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동 업무의
완료시까지 조속히 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업무의 내용)

- ① "위탁자"는 "위탁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및 원인의 조사, 보험목적의 현황 및
손해상황조사, 보험목적의 보험가액 산정 및 보험목적의 손해액 사정,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손해사정업무"라 한다)

2. “위탁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사정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수탁자”에게 서류 위임을 의뢰한 소액사고의 경우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사정(이하 “손해액 간편사정업무”라 한다)
 3.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여부 검토, 보험금 사정, 기타 보험금 사정에 필요한 사항 (이하 “보험금사정업무”라 한다)
- ② “위탁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적부심사(농작물재해보험 인수점검 등) 등 인수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위탁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경우 당해 업무에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가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경우 보험사고의 종류,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업무량 등을 정한다.

제4조 (계약의 이행)

-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자기의 책임으로 수탁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손해평가 이해관계자와 협조하여 수탁된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손해사정결과 중간안내)

- ①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 중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미평가보험 계약물건에 대하여 손해조사 후 손해품목, 수량 등 주요 조사내용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양식에 의거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중간안내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아닌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요청으로 중간안내를 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자”와 그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사정 보고서 제출)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손해사정업무 의뢰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해당사항을 조사하고, 의뢰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현장조사보고서(“위탁자” 요청시)를, 20영업일 내에 손해사정 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농작물재해보험은 조사완료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손해사정 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해 발생사실의 확인 및 원인조사
2. 보험목적의 현황조사
3. 보험목적의 손해상황 조사
4. 보험목적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사정
5. 보험목적의 손해액 사정
6. 기타 손해액 사정에 필요한 사항

② 보험사고 또는 손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유로 제①항의 기한 내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기한 만료일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보고서 제출기한을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①항의 보고서에 조사한 각 조사인과 손해사정사 및 대표자가 보고서 내용을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역량 평가)

“위탁자”는 손해사정법인 운영계획(안)에 의거 공지한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본 계약기간 중 위임 업무량 조정 및 차기 업무위임 계약 여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설명 의무)

① “수탁자”는 수임 당일(영업시간 초과 시 그 익 영업일 오전)내에 보험 계약자 등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진행과정 등을 안내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험조사, 손해사정 등을 위해 보험소비자를 최초 접촉할 때 반드시 향후 주요 조사 및 손해사정 절차 등을 안내하고, 이후 절차가 변경된 경우 즉시 이를 보험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보험조사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을 위해 피보험자 및 피해자 등 사고 관련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적용된 관계법규 및 약관 규정 등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안내하고, 유선으로 안내할 경우에는 녹취 등의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

제9조 (계약이행의 지도)

- ① “위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지도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도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지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탁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보수의 청구 및 지급)

-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완료하고 보고서 일체를 제출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한 소정의 손해사정 수수료(첨부4. 손해사정 수수료 지급기준)를 “수탁자”에게 지급(“수탁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단, “본 계약”의 적용일 이전에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는 위탁당시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위탁자”가 계약기간 중 경제사정의 변화, 물가상승, 법령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등 손해사정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수탁자”가 문서로서 승인하면 변경된 것으로 한다.
- ③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임된 건 및 조사 대상 또는 물건을 제한하여 수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양자 간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별도의 수수료 기준을 따른다.
- ④ “위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사정 수수료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 (손해배상)

- ① “수탁자”는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라 손해사정인 전문인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제①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임직원(“수탁자”의 하도급자 등을 포함한다)이 행한 행위는 “수탁자”의 행위로 본다.

제13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 ① “수탁자”는 제2조 제①항의 계약기간 동안 보상한도액 3억원 이상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개인정보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위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제①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 1개월 전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손해사정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행정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포함한다)
 4. “수탁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5.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6. “수탁자”의 본 계약상의 업무수행이 “위탁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탁자”가 판단하는 경우
 7.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제출한 자료(자격확인 서류 등)가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8. “수탁자”가 근거 없는 투서 등으로 회사 또는 직원을 비방한 경우
- ② 제①항의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 없는 당사자는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금융결제원 등)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파산절차의 개시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회사의 해산결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의 집행을 받거나 국세나 지방세 체납 기타 공법상의 처분을 받고 7일 이내에 집행취소나 체납 등 처분의 취소를 받지 않은 경우
- ③ 본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이전에 발생한 미결 건은 종결 시까지 본 계약내용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 ④ 계약해지 이후라도 5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해지 이후에 “수탁자”가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 수행하더라도 본 계약 해지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⑥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 업무위탁 계약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① “수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모든 정보와 보험계약자 등(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포함)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위탁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수탁자”가 제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책임 있는 “수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고객정보보호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임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탁자”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관련 서류(전산파일포함)에 대해 PRM 시스템에 등재한 후 최종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파기하고 “위탁자”가 분기별 교육 및 점검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제출한다.
- ⑤ 본 조의 내용은 본 계약의 기간만료,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더라도 유효하다.
-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①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계약 위반의 결과가 아닌 이유로 일반 공공에게 정보가 알려진 경우
 2. 법령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요구된 경우
 3. 금융감독기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4.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경우
- ⑦ “수탁자”는 “위탁자”와 첨부1, 2, 3의 양식으로 “윤리서약서”, “개인(신용)정보처리 업무위탁 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 보안서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7조 (민원 및 소송발생 예방)

- ①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 계약자 등은 물론 제3자로부터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 되더라도 전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수탁자”가 제①항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등” 또는 제3자로부터 민원 또는 소송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포함)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적재산권 불침해 보증)

- ① “수탁자”는 이권 계약목적 이외에 “수탁자”의 영업·홍보활동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위탁자”의 지적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탁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면책조항)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 지체가 천재지변, 폭풍, 전쟁, 소요사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일부의 무효)

본 계약의 어느 일부가 법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무효로 되지 않는 다른 조항은 유효하다.

제21조 (계약의 해석 및 법령준수)

-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내용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②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 ③ “수탁자”는 본 계약내용의 이행이 보험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행됨을 보증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협의를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 (기타사항)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첨부 : 1. 윤리서약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약정서 1부
3. 개인(신용)정보 보안 서약서 1부
4. 손해사정 수수료 지급기준 1부

2018 년 월 일

위탁자 : NH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병 관 (인)

수탁자 :

【첨부.1】

윤리서약서

당사는 NH농협손해보험(주)와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 회사로서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령 및 사회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배하는 불공정 거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1. 우리회사의 임직원은 NH농협손해보험(주)의 고객을 당사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언제나 고객만족의 보상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우리회사의 임직원은 위임받은 업무수행 시 관련 법령, 약관 및 기타 NH농협손해보험(주)이 제공하는 지침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3. 우리회사의 임직원은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겠습니다.
4. 우리회사의 임직원은 NH농협손해보험(주)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 유형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우리회사의 임직원은 수입업무과정에서 취득한 계약자,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주)의 내부정보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6. 우리회사의 임직원은 NH농협손해보험(주)의 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하며, 수시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회사는 상기 서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배하여 NH농협손해보험(주)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 년 월 일

손해사정(주) (인)

【첨부.2】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약정서

본 위탁약정(이하 "본 약정")은 20 년 []월 []일자로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위탁자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7층

NH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병 관

수탁자 :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이하 "본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정에서 사용된 용어는 그 문맥에 반하지 않는 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등) 위탁자가 본건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범위 및 수탁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사무의 목적: [(예시) 보험사고 조사 위탁]
2. 위탁사무의 범위: [(예시) 보험사고 조사]
3.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예시)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약정보]

제4조(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이하 "본건 개인정보")를 본건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본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및 업무처리 감독) ① 수탁자는 본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본건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본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허용되는 본건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각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 ④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허용되는 본건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를 정하여 그 명단과 내역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 및 열람·처리의 범위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된 명단과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물리적 접근 방지) ① 수탁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본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본 약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은 본 약정의 불이행으로 본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수탁자는 본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보호책임자의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반납) ① 수탁자는 본건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된 이후 지체 없이 본건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방법에 의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건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본건 개인정보의 파기 및 처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본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그 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개인정보의 파기 및 처리 중단을 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목록과 정보주체의 요청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건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파기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고, 위탁자가 최종 승인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파기 및 처리 중단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는 개인정보 파기 여부 및 파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유출통지 등) ① 수탁자는 본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알리고, 동법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자료의 제공, 대책마련 등을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위해 위탁자가 지정한 공인된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또는 기타 위탁자가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한 후, 위탁자에게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교체되는 경우 추가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한 후 이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실시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 점검)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보안관리 상태, 개인정보 파기의 이행 여부, 교육실시 현황 등 본 약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탁자의 사무실, 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점검을 실시한 후,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재위탁의 제한) ① 수탁자는 제3자에게 본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재위탁의 범위, 목적 및 재수탁자의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위탁자로 하여금 재위탁 승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후, 위탁자로부터 재위탁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재수탁자로부터 위탁자가 정한 확약서를 수령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준수 의무 및 확약사항) ① 수탁자는 본 약정에 따른 본건 개인정보의 수탁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과 기술, 책임능력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인(신용)정보 관련 관계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본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④ 위탁자가 본건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기준의 불공정, 법규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본 약정 및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상 수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 또는 해태하거나 위탁자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본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의 제1항의 의무 불이행이 중대하거나 더 이상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는 본건 위탁계약 외에 수탁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다른 개인정보 취급업무 관련 계약에 대해서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책임 등) ① 수탁자가 본 약정의 확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정 및 신용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함으로써 위탁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배상청구와 관련된 소송 등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함)을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본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위탁자 및 위탁자의 임직원, 대리인등을 면책시켜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임직원, 대리인을 포함함)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제3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자는 이에 대해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배상한 손해배상액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배상청구와 관련된 소송 등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함)을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수탁자가 재수탁 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야기한 손해와 동일하게 제1항 내지 제3항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위탁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수탁업무의 규모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최소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① 본 약정은 본건 위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본건 위탁계약이 해지, 종료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까지 유효하다.

② 본 약정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본 약정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본 약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18조(위탁계약과의 일체성) 본 약정은 본건 위탁계약의 일부를 이루며, 본건 위탁계약서 위탁사무의 목적과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본 약정 제3조는 그에 따라 변경된다.

본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 NH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병 관

수탁자 :

【첨부.3】

개인(신용)정보 보안서약서

NH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개인(신용)정보처리업무 위수탁약정을 체결한 수탁업체의 개인정보취급자 _____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취급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는 회사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가 위탁한 개인(신용)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회사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준수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의 금지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현황 점검
 -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신용)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 취급업무 종료 시의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등 의무사항 이행
 - 회사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개인정보취급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내용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개인정보취급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개인정보취급자는 회사의 정보보호 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수탁업체명 : _____

개인정보취급자명 : _____ (인)

손해사정 수수료 지급기준

1 재물(1종·해상·항공)보험

1. 목 적

-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재물(제1·2종) 손해사정 위임업무 대한 수수료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부위탁

-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서 정한 손해사정업무 일부만을 지정, 위탁할 경우의 수수료는 이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따로 정할 수 있다.

3. 일괄위탁시 적용 수수료

- 보험종목이나 담보위험의 종류 또는 보험사고 일체에 관한 손해사정업무를 특정 선임손해사정사에게 일괄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의하여 이 기준에 정한 수수료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수수료의 추가 지급

- 위임대상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위임 시 또는 위임처리 업무 종결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타사 중복보험 시 적용

- 1사고 1물건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자가 관련되어 각 보험자가 공동으로 1선임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수수료 금액을 각 보험사가 비례하여 분담한다.

6. 수수료의 지급기준

-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선임손해사정사의 수수료는 “별표1 ~ 별표5 중 해당 보험종목 별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표”와 “별표 6.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기 산정한 금액에 당해 사고의 특성상 관계 전문인의 활용 등 이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소요실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부대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7. 수수료의 감액 및 부지급

- "수탁자"가 손해사정업무 수행 중 아래의 사유로 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대외기관에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위탁자"는 보험종목별 각각의 “손해사정 수수료 지급기준” 에도 불구하고 산정된 보수의 50% 범위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사실, 보험가액, 손해액 등 손해사정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통상적인 손해사정 절차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업무 수행 시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수수료의 지급시기

- "위탁자"는 "수탁자"의 최종 손해사정보고서 및 손해사정 수수료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사정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서류미비, 보고서 수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최종 손해사정 보고서의 보완 필요 등 위임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수수료의 청구

- “수탁자”는 계산서를 스마트빌에서 발행하여 “위탁자”의 아래의 웹메일로 수수료를 청구한다.

부 서	업 무	웹메일주소
지급심사부	재물·인보험	nhfire8194-1@nonghyup.com
정책보험지급부	가축·농기계 등	
농업보험지급심사부	농작물재해보험	nhfire8162-1@nonghyup.com

2

인보험(4종)

1. 수수료 지급기준

구분	조사기준		기본보수	일당	비고
장기 인보험	현장조사	일반조사	28만원	3만원	1건당
		단순조사	13만원	-	1건당

- 동일사고, 동일증권 또는 다수증권 동시 청구는 담보 구분없이 1건으로 취급
- 단순조사란 서류 발급 등 조사가 불필요하거나 손해발생 확인, 약관 및 관계 법규 판단건을 말함
- 단순조사로 위임했으나 조사 진행시 난이도에 따라 일반조사로 변경 가능

2. 기타 제증명료 비용 등

- 증빙 영수증이 있는 경우 실비를 지급
- 영문보고서의 경우 1보고서당 100,000원을 기본 비용에 가산하여 지급

3. 심층 및 특정조사 지급기준

- 심층조사건 : 적절한 조사의 결과물 제출 시 심사금액 × 110% 한도 지급
- 특정조사(보험사기·TF 등)건은 심사지원부와 협의 후 진행

※ 1. 기준표에 의한 금액과 중복지급 불가

4.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1종 수수료 기준에 준하며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별표 1. 재물(1종)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1부
2. 재물(2종_선박·항공))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1부
 3.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시설제외) 1부
 4.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시설) 1부
 5. 농작물재해보험 인수점검 및 인수지원서비스 수수료 기준 1부
 6. 여비·교통비 지급기준 1부

[별표.1]

재물(1종)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1. 손해사정 보수표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
3백만원 미만 및 면책건	기본료	500,000
3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580,000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660,000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5.06	660,000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4.18	1,012,00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74	1,254,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88	1,87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20	2,88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95	4,40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61	5,85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27	8,0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0.89	12,7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0.82	17,800,000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73	24,600,0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6,500,000 + 50억원 초과금액 × 0.4% 가산	
100억원 초과	56,500,000 + 100억원 초과금액 × 0.2% 가산	

2. 수수료 기준

- 가. 화재, 폭발, 풍수재, 농기계(자차) 등 재물 전손사고의 기본 보수는 상호합의에 의해 손해액 확정금액의 50%를 손해사정금액으로 하여 위 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손 사고라함은 손해액 확정금액이 보험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동산에 대하여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 대인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손해액확정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손해사정금액”으로 정하여 상기 수수료 기준표의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손해사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요율 5백만원이상~10백만원미만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 다. 이 수수료 기준표를 적용함에 있어 손해사정금액 10백만원 이상 건 중 산출된 수수료가 구간별 기준액(기본료) 보다 적을 경우 구간별 기준액을 적용한다.
- 라. 가축재해보험은 손해액의 70% 상당액을 손해사정 금액으로 적용한다.
단, 축산휴지특약은 30% 적용
- 마. 농기계종합보험 자기차량의 사고는 손해액의 70% 상당액을 손해사정 금액으로 적용한다.
- 바. 지급보험금액이 손해액 확정금액의 30% 미만인 경우 손해사정금액은 손해액 확정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 사. 이 수수료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별도 지침에 의해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아.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약관(특별약관 포함)에 대한 손해사정업무의 경우 “손해사정금액”은 약관상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 등의 공제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고, “위탁자”는 손해조사 위임 시 조사대상 물건(또는 내용)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집단사고 수수료 기준

- 피해자 또는 피해세대수가 10인 이상인 집단사고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할증율을 적용한다.

구분	할증율	비고
10 ~ 30인 미만	손해사정 수수료의 1.2배	-
30 ~ 200인 미만	손해사정 수수료의 1.5배	-
200인 이상	손해사정 수수료의 2배	-

*주) 아파트 낙뢰사고 제외

4. 단순사고 수수료 기준

○ 적용대상 및 수수료 기준

대 상 건	기 준 액
• 가계성 도난사고	50만원
• 홀인원보험, 골프용품손해사고	50만원
• 가축재해보험 "말"보험	66만원
• 가축재해보험 "소"보험	10만원
• 농기계종합보험 항공방제기	66만원
• 농기계보험 자기신체사고 전 건	50만원
• 농기계보험 간편 조사 건	5.4만원
• 가축재해보험 “소” 보험 간편 조사 건	3.5만원

* 주) 풍수해보험은 별도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5. 신종보험 수수료 기준

가. 대상 : 재물, 금융보험(BBB, 전자금융배상책임), 신원보증보험 등 “수탁자”가 신종보험 수수료 적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나. 수수료 산정 (Time base)

- 조사자 경력별 적용

조사자 경력	시간당 수수료
5년 미만	50,000원
10년 미만	70,000원
10년 이상	90,000원

- 수수료 산정 내역서를 제출한다.
- 수수료 산정의 시간은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등 실제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 건의 난이도, 노력도, 성과에 따라 해당 “시간당 수수료기준”의 차상위 또는 차하위를 적용할 수 있다.
- 조사경력은 해당 보종의 업무처리 경력기준으로 한다.
- 일당은 별도 지급한다.
- 보수 5백만원 초과시 보험자와 별도 협의 후 산정한다.

6. 보험사기 조사건 성과급

○ 대상 및 지급기준

구분	대상	지급기준
우수조사	조사자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위장사고, Moral 사고 입증 (단, 청구포기 징구 및 객관적인 조사과정 결과 근거로 함)	난이도와 노력도에 따라 추정지급보험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한다.
보험사기	조사자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입건, 구속, 기소되어 형사판결 또는 민사판결로 보험사기 확정된 건	난이도와 노력도에 따라 추정지급보험금의 10~20배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한다

재물(2종_선박·항공)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1. 손해사정 수수료

종목	기준	금 액(원)	
1. 선박 (선체, 기관, 의장 등)	1) 현장조사 가. 1인 1일	150,000	
	2)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가. 기본료 나. 수수료 지급기준	500,000	
	손해사정금액	요율	금 액(원)
	10백만원까지	2.2%	10백만원까지 × 2.2%
	10백만원초과 ~ 30백만원까지	1.65%	220,000 + 10백만원초과 × 1.65%
	30백만원초과 ~ 50백만원까지	1.1%	550,000 + 30백만원초과 × 1.1%
	50백만원초과 ~ 100백만원까지	0.77%	770,000 + 50백만원초과 × 0.77%
	100백만원초과 ~ 10억원까지	0.55%	1,155,000 + 100백만원초과 × 0.55%
10억원초과~	0.22%	6,105,000 + 10억원초과 × 0.22%	
2. 항공기 (기체, 기관, 의장 등)	1) 현장조사 가. 1인 1일	300,000	
	2)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가. 기본료 나. 수수료 지급기준 ○ 상기 선박의 지급기준과 동일	500,000	
3. 해난선박의 구조 조사 및 구조비 산정	○ 1인 1일당 단, 별도 구조보고서 발행 시 상기 선박의 손 해사정 수수료 기준을 적용함.	300,000	
4. 화물 조사	1) 현장조사 ○ 1인 1일	150,000	
	2)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 기본료	400,000	

* 주) 1. 선박, 항공 전손사고의 상기 손해사정금액에 관한 보수는 위탁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위표에 의하여 계산된 보수의 5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2. 보험금 사정 수수료 기준

구분	보험금사정금액(기준)	요율	
		단독해손	공동해손/구조비/RDC
근무보수	1인 1시간당	50,000원	50,000원
기본료	건당	400,000원	400,000원
손해사정	25백만원까지	사정금액의 2.2%	사정금액의 3.85%
	25백만원초과 ~50백만원까지	550,000원 + 25백만원초과금액 × 1.1%	962,500원 + 25백만원초과금액 × 2.75%
	50백만원초과 ~75백만원까지	825,000원 + 50백만원초과금액 × 0.88%	1,650,000원 + 50백만원초과금액 × 2.2%
	75백만원초과 ~100백만원까지	1,045,000원 + 75백만원초과금액 × 0.77%	2,200,000원 + 75백만원초과금액 × 1.65%
	100백만원초과 ~10억원까지	1,237,500원 + 100백만원초과금액 × 0.33%	2,612,500원 + 100백만원초과금액 × 0.88%
	10억원초과	4,207,500원 + 10억원초과금액 × 0.22%	10,532,500원 + 10억원초과금액 × 0.44%

[별표.3]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시설 제외)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조사비	기본 수수료	조사자	600천원/일 1일2건미만 50%지급
		현장관리자	800천원/일
	사기조사 수수료		800천원/일

1. 1일 2건 미만(벼는 1일 3건 미만) 처리 시에는 조사비의 50%를 지급한다. 단, 위탁자가 1일 조사건수를 정하여 위임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임한 경우에는 조사건수를 일수로 환산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기본수수료 중 현장관리자는 “위탁자”가 현장관리자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탁자”에게 업무위임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기조사 수수료는 “위탁자”가 다음 각 항의 사항이 의심되는 사기조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탁자"에게 업무위임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①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로 의심되는 경우
 - ② 고의적 보험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 ③ 보험사고가 위장 및 날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④ 보험사고 발생 시 범죄행위를 자행한 경우

[별표.4]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시설)

손해사정금액	원예시설	
	요율(%)	구간별 기준액(원)
3백만 원 미만 및 면책	기본료	350,000
3백만 원 이상 ~ 5백만 원 미만		406,000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		462,000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3.54	462,000
2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93	708,000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2.62	879,000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2.02	1,310,000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1.54	2,020,000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1.37	3,080,000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1.13	4,110,000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0.89	5,650,000
10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0.62	8,900,000
2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0.57	12,400,000
3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0.51	15,300,000
5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25,500,000 + (50억 원 초과분*0.28%)	
100억 원 이상	39,500,000 + (100억 원 초과분*0.14%)	

1. 전손사고의 손해사정 기본보수는 확정된 손해액의 50%를 손해사정금액으로 하여 위 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전손사고는 동 단위(하우스 또는 시설작물)를 기준으로 한다.
2. 조사자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위장사고, 피해 확대 등을 입증하여 면책 또는 손해액을 감액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감액된 손해액의 5배 이내에 해당되는 금액과 확정손해액을 합하여 손해사정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이 보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손해사정 금액 10백만원 이상 건 중 산출된 보수가 구간 별 기준액(또는 기본료)보다 적을 때에는 구간 별 기준액을 적용한다.
4. 조사팀 구성은 "수탁자"회사 소속직원 1인 1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수당은 사고당 적용한다.

[별표.5]

농작물재해보험 인수점검 및 인수지원서비스 수수료 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조사비	기본 수수료	인수점검	600천원/일
		인수지원	600천원/일

1. 인수점검 및 인수지원서비스에 대한 1일 조사건수는 인수부에서 정하는 품목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2. 예외사항

인수부에서 정하는 품목별 세부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거나, 동 세부기준의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사정법인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별표. 6】

여비 ·교통비 지급기준(공통)

1.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일비	평일	30,000원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60,000원
교통비	항공임	실비(2등석Economy)
	철도임	실비(KTX특실 제외)
	선(여객선)임	실비(1등정액)
	고속·시외버스	실비
	택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2회)
	업무용 승용차	유류비 및 통행료 실비
숙박비	1인	40,000원
	2인	60,000원

2. 적용기준

가. 대한민국내 손해사정법인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시단위 기준)의 여비교통비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단,“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타지역 소재 조사자가 시외 출장한 경우에는 상기“여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나. 교통비 및 숙박비는 통행료 영수증 등 기타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다. 업무용 승용차 이용 시 유류비 기준

구분	산식	비고
일반·장기·정책	주행거리 × l당 요금 ÷ 평균연비	
농작물	(주행거리 × l당 요금 ÷ 평균연비) × 1.1	농작물특성반영

○ 거리기준 : 출발지와 출장지간의 실제 이동거리

- 한국도로공사, 다음, 네이버 길찾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첨부

○ l당 요금 : www.opinet.co.kr (출장 시작일 기준 주간 평균 유가)

○ 평균연비

휘발유	경유	LPG
10.06	10.16	7.87

라. 숙박비는 1인기준 4만원, 2인기준 6만원을 적용한다.

* 숙박비 지급 예시: 1박기준

인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4만원	6만원	10만원	12만원	16만원	18만원